

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서

- 한국토지주택공사 · 한국자활복지개발원 -

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「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(10.24)」 관련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비주택거주자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각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,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.

1. 한국토지주택공사는,

- ①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해당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 및 자활서비스 지원에 소외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.
- ②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까지 통합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관리업체 선정 · 평가 시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입주민 일자리 제공 항목에 충분한 가점을 부여한다.

2.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,

- ①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자활사례관리를 제공한다.

② 매입임대주택 입주인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 통합
수행 시범사업 추진 시 자활사례관리를 지자체 및 지역자원과 연계
하여 제공한다.

제3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타
기관의 업무내용 중 비밀유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합의
없이 공개할 수 없다.

제4조(협약효력)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
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 단, 협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
원하는 기관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각 당사자 간
의 합의하에 해지를 결정한다.

제5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 및
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을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
입각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.

2019년 12월 27일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한국토지주택공사

이행학

백경훈